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허브팀 **공고 제2022-0201호**

2022년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상반기 참가기업 모집공고(수혜사업)

경기도 내 미래 유망 기술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지원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**2022년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**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2년 2월 7일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❍ **사 업 명** : 2022년 경기스타트업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

❍ **사업내용**

-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 간(투자자↔스타트업) 투자가 성사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액 50% 이내 사업화 자금지원

❍ **지원사항** : 시제품 제작비, 홍보/마케팅비, 지식재산권비 등 사업화 자금

- 지원금액 : 최대 30백만원 까지

❍ **지원규모** : 상반기 5개사 (하반기 5개사 6월 모집 공고 예정)

2. 지원대상

❍ **지원자격**

-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 간(스타트업-투자자) 투자가 완료된 스타트업

구 분	요 건
스타트업	◦ 회사 설립일이 7년 미만인 기업 ◦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경기도 소재 ◦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회원으로 가입 후에 투자자로부터 투자계약 체결완료 ※ '21년도 1.1. 이후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을 통해 투자받은 스타트업
투자자	◦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회원사로 투자자금 메뉴 내 투자회사로 등록된 경우 ※ 한국벤처캐피탈협회, 한국엔젤투자협회,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회원사

3. 지원내용

❍ 지원내용

- 지원금액 : 투자유치액의 50%이내, 최대 30백만원 이내(총 사업비의 80%)

투자사 투자금	사업화 지원금(사업비)	
	경기도 지원금	참여기업 부담금
경기도 지원금의 50% 이상 (60백만원 내외)	총 사업비의 80% 이내 (최대 30백만원)	총 사업비의 20% 이상 (현금+현물)

❍ 지원항목 : 시제품제작비, 홍보/마케팅비, 지식재산권비 등 사업화 지원

분 야		지원내용
아이템 개발		◦ 금형, 목형, 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 외주용역비, 시제품 제작용 재료구입비, 시험분석 및 각종 인증획득비,제품 기구설계, PCB 설계, 금형설계 등 ※ 외주용역비 : 본인이 시제품제작이 불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에 한해 지급할 수 있는 비용 ※ 재료구입비 : 시제품제작에 투입되는 물품으로서,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의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경비(견품, 시약, 재료 구입비 등) (제품제작시 필요한 최소수량 구입분만 인정하며 최소수량분이라는 확인증을 거래처에서 받아 증빙)
	지식서비스 분야	◦ 외주용역(개발)비, 소프트웨어 임차비만 인정 -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구입 인정
		◦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비(개발 인건비) - 인건비는 협약기간내 신규 채용자에 한함 (총비용 80% 이내, 고용인원 1인 월 최대200만원)
		◦ 협약기간 중 기자재 임차료만 인정
마케팅 지원	멀티 미디어	◦ 회사의 제품 특징 등을 반영한 홈페이지 또는 쇼핑몰, 홍보용 모바일 웹/앱 지원 ◦ 촬영 및 그래픽을 활용한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지원 ※ (제외) 제품·서비스 자체를 구성하는 앱 개발 비용, 기존 홈페이지, 모바일 앱 리뉴얼 등
	디자인	◦ 전자·종이 카달로그, 포스터·포장 디자인, 브랜드 개발, 제품 디자인 등 ※ (제외) 제품·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재료비, 시제품 제작비, 장비 구입비 등
	광고 홍보	◦ TV 라디오 광고, 신문·전문지 홍보, 지하철·버스·옥외 광고, 온라인 홍보, 크라우드펀딩(온오프 입점 등), 국내외전시 참가비용 등 ※ (제외) PPL, 팟캐스트, 소비자 반응 조사 등
지식 재산권		◦ 지식재산권 출원비(등록비) 지원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)
세무회계 등		◦ 회계감사비(회계감사보고서), 시장조사비용 등 ◦ 해외전시회 참가지원, 해외세미나, 포럼, 기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

※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 및 서식 참조

4. 지원제외

❍ 제외대상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
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기업(단, 시효 소멸자는 제외)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동일(유사포함) 과제로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 등)에 협약을 체결(예정)하여 수행중인 기업 또는 협약체결 기간 중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

  ※ 창업교육, 시설·공간·보육 지원, 멘토링·컨설팅 지원, 행사·네트워크는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 등)에 해당되지 않음.
-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(사업화지원사업 등)에 참여 제한(중단, 포기, 실패 등) 중인 경우
- 휴업 중 또는 모집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기업
-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또는 중도 포기한 자
- 11개 법률(2년 이내)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

  ※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진동관리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국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

5. 신청 및 접수

❍ 신청기간 : ´22. 02. 07.(월) ~ 02. 28.(월) 10시 까지

❍ 신청방법 : 경기스타트업플랫폼(www.gsp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- 플랫폼 내 “지원사업” 메뉴에서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
- 마이스페이스홈 - 활동이력 - 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확인 필요

❍ 제출서류

- 참여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원금 사용계획서
-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, 투자금 송금확인증
-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, 창업동의서,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(스타트업, 투자사), 법인등기부등본(스타트업)
-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, 사실 여부 확약서
-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사실확인서(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표시광고법)

※ 이외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폐기물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, 소음진동관리법,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은 관할 노동지청 및 시군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예정으로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않음.
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성과증빙(매출, 고용, 지식재산권, 수상 등)

6. 평가 및 선정

❍ 선정절차

1차 사전심사 (서류검토)		중복수혜 검토		2차 본심사 (발표평가)		선정		자금지원
사업담당자 신청서 검토 투자사실검증	➡	동일기간 창업지원사업 참여여부	➡	외부 전문가 5인 사업아이템 기술성 성장가능성 등	➡	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안내	➡	투자유치액의 50%이내 최대 3천만원

- 1차 사전심사(서류검토)

· 플랫폼 회원여부 확인 : 투자자 및 스타트업 회원여부 확인

· 투자사실검증 :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, 투자금 입금증빙 등 투자 적절성 검증

- 2차 본 심사(발표평가)

· 평가위원 : 외부 전문가 5인 내외

· 평가내용 : 투자사실 재검증,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적정성, 사업아이템 기술성, 사업아이템의 성장가능성 등

· 평가방법 :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(소수2째자리에서 반올림)하여 산정하며, 70점 이상인 자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
❍ **선정취소** : 신청서 허위기재·기타 불법사항 발견시 선정 취소, 지원액 환수,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 수반시)

7. 기타

❍ **향후일정**

모집공고	⇨	1차 사전심사 (서류검토)	⇨	2차 본심사 (발표평가)	⇨	협약체결
’22.02.07.~02.25.		’22.03.04.		’22.03.11.		’22년 3월말

※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기간, 예산, 사업의 취소 등 변경될 수 있음.

❍ **문의사항**

- **담당자 이름(부서명)** : 김명주(창업허브팀)
- **담당자 연락처** : 031-8039-7106
- **담당자 이메일** : myungjookim@gbsa.or.kr